

# '94 축산 시책 방향(양계)

— 농림수산부 —

## (기본방향)

- 생산성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축산전업농의 본격 육성
  - 축사시설의 자동화
  - 생산·가공·유통의 통합경영을 위한 계열화
  - 부업규모 농가들의 협업화
  - 사양기술 및 가축개량을 위한 기술혁신
- 품질고급화 및 유통혁신
  - 한우품질고급화로 시장 차별화 : 전문집육성, 브랜드화 및 홍보강화
  - 도축시설의 규모화, 자동화
  - 육류도체등급제 및 차등가격제 실시 확대
- 위생 및 검역기능 강화
  - 잔류물질 검사 확대 및 강화
  - 수입개방 대비 검역강화 5개년 계획 수립 추진('92~'96년)
  - 축산 오·폐수처리 및 자원화
- 축산사업 추진체계의 개선
  -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양축가대표의 참여확대
  - 사업별, 부문별 지원방식에서 지원대상자별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
  - 전문생산자의 조직화로 생산이외 부가가치의 농민소득화

## 축정과 소관

### 1. 양축자금 지원

#### 가. 사업의 목적

○ 양축가에게 저리의 양축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양축가의 경영비 절감 및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

#### 나. 사업내용과 지원조건

##### (1) 자금의 용도

○ 양축농가의 사료구입비, 동물약품구입비 등 가축사양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여 단기지원

##### (2)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가축사육 여건을 갖춘 양축농가
- 호당 지원한도 : 3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1년이내로 함
  - 대출금 상환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 1년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금리 및 이자징수
  - 금리 : 년 5%
  - 이자징수 : 원금상환일에 후취

**다. 지원절차**

**(1) 일반 양축자금**

○ 지원대상자 추천

— 양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양축가는 융자 추천신청서를 작성, 관할축산계장(또는 축협조합 대의원)에게 신청

— 축산계장은 축협조합원 여부에 불구하고 조합의 자금배정액 범위안에서 양축가별 양축규모와 자금사정, 그동안의 양축자금지원 여부 등을 감안 「융자협의회」에서 지원순서와 지원액을 협의 조정하고 양축자금 지원대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대출 조합에 제출

— 「융자협의회」는 축협조합장이 각 구역별로 위촉하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 읍·면·동의 축산 담당공무원 1명, 축산 후계자 대표 1명, 일반양축가 대표 2명으로 구성

— 축산계가 조직되지 아니한 지역은 축협 조합 대의원 선거규정에 의한 선거구별로 위 요청에 의거 대의원이 추천

○ 지원대상자 확정 및 공개

— 축협조합장은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이 「융자협의회」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서 대출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축협간행물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추천자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대출금의 지급

— 대출금은 출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제하지 못하며,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양축자금의 소비자금화를 방지하고, 현금 소지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하여 통장으로 지급하고, 자금 필요시 인출 사용토록 장려

—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는 융자대상자를 추천한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에 통보하여야 함.

○ 지원계획 등 홍보

— 축협조합장은 지역별 양축자금 배정액,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지원계획을 관내 시·군·구·읍·면·동사무 등에 통보하고 이를 양축농가에게 홍보하여야 함.

**(2) 특수목적 양축자금(50억원)**

○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가축사양비, 시설복구비, 자축 구입비 등에 지원하되 사유 미발생시는 축협중앙회장이 일반양축자금으로 전용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준은 별도 시달하는 요청에 의함.

**라. '94 지원규모(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93(A)	'94(B)	증감(B-A)
조달	재정자금	800	1,208	408
	한은차입금	1,040	832	△208
	축협자금	1,560	1,960	400
계		3,400	4,000	600
운용	일반양축자금	3,350	3,950	600
	특수양축자금	50	50	-

**2. '94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농가 등 해외연수계획**

**가. 목적**

○ 전문 축산농가 등의 해외연수를 통한 새로운 경영능력 배양과 양축의욕 고취로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

○ 선진 농업국의 축산기술 도입·활용으로 생산비 절감

○ 전업축산농의 육성과 축산업구조조정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나. 분야별 연수대상국 및 계획인원**

분야별	연수대상국	연수계획인원	연수시기	연수기간	연수대상자
육우	일본	46명(2개반)	7, 8월	10일간	한우사육농가
	캐나다	23 (1)	7	10	낙농농가
	덴마크, 네덜란드	23 (1)	8	10	양돈사육농가
육계산란계	미국	18 (1)	9	10	육계사육농가
	일본	18 (1)	10	10	산란계사육농가
유통	일본, 덴마크	23 (1)	10	10	유통종사자
	계	151 (7)			

\*대상국 및 연수시기는 현지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가능.

### 3. 재해대책

#### 가. 사업의 목적

- 재해예방을 사전준비 철저로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
-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지원대책의 신속한 피해 최소화

#### 나.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

- (1) 지원근거 : 풍수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 (2) 지원대상 : 중앙재해대책본부(풍수해대책법) 및 농림수산부(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복구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재해양축농가
  - \* 중앙복구지원 대상이 아닌 피해양축농가는 자력복구 실시(지방비 지원포함)
- (3) 재해복구비용 재원확보 방침
  - 국고보조금 : 정부예비비 또는 농림수산부 기정예산에서 전·이용
  - 융자금

재원별	비 목	금리	융자기간		비 고
			거치	상환	
농특회계	재 해 대책비	5%	3년	7년	○ 축사기자재 등 구조 개선성 복구비
축발기금	예비비	5	3	7	○ 가축·초지 등 복구비

- 다만, 융자금재원 형편에 따라 재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채권보전은 축협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4)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구 분	조 건	부 담 율			비고
		국고보조	융자	자담	
축 사		%			
- 대규모시설 (400㎡이상)	당해년도 건조가격	-	50	50	
- 중·소규모시설	"	20	60	20	
초 지	"	-	50	50	

가축(유실·폐사)	어린가축 입식비	20	60	20	
-----------	-------------	----	----	----	--

\* 축사·초지의 경우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 17조에 의거 피해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 이외의 시설물이거나 허가 및 면허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5) 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 21조에 의거 50% 이상 피해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2년간)
- 피해농가 양축자금 대출액은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농림수산부에 보고

#### 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요령

##### (1) 가축 및 축사관리

- 축사주위, 방목장, 분뇨처리 등 배수로 정비
- 넓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
- 비상사료를 10일분 이상 비축
- 가마니, 마대, 새끼 등 준비
- 홍수, 폭설 등에 의한 위협예상 지역의 축사 및 가축을 사전 조사하여 대책 강구

##### (2)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 긴급방역비 확보로 소독약, 예방약 등 방역약품 사전 비축
- 소독기 등 방역장비 사전점검
- 공수의 등 동원체계 점검
- 폐사축은 신속히 소각 또는 매몰
- 침수지역은 축사 등에 대한 소독 실시
- 가축전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예방주사 실시

##### (3) 초지 및 사료작물 관리

- 침수, 유실, 매몰 등 피해예상 지역은 배수로 정비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사업비등의 신속한 지원

##### (4) 재해양축농가에 대한 지원 우선 등

- 재해발생시 시·도지사는 피해 양축농가가 출

하하는 가축에 대하여 도축(도계), 판매, 검사, 계류, 정산 등 필요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 협조

- 재해발생시 시·도지사는 종합지원대상 이외의 재해양축가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 축협에 양축자금 또는 축협일반자금 우선지원 협조 요청
- 지원요청을 받은 축협조합장은 타농가에 우선하여 지원

**(5) 기타 행정사항**

- 피해복구 및 사후관리는 시·도지사 감독하에 관할시장·군수 주관으로 실시
- 시·도지사는 피해복구 완료와 동시에 별첨 양식에 의거 정산보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풍수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의 제규정에 의거 추진
-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사진촬영하여 복구지원시 활용
- 시·도지사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양축농가들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하여 관내 양축농가에 지도

**라. 재해 양축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1) 사업의 목적**

○피해내용이 극심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 계획만으로 충분한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양축자금을 특별지원하여 재해양축농가의 자금지원해소 등 재활기반 구축

**(2) 지원의 내용과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재해내용이 극심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해
  - 피해내용중 가축이 유실 또는 폐사한 경우로서 호당지원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는 양축농가
  - 지원대상가축: 소, 말, 양, 돼지,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짐승, 가금
- 재 원 : '94 양축자금중에서 지원

- 지원기준
  - 호당지원액 : 피해당시 조사된 가축피해액-정부지원액(국고+융자금)
  - 호당지원한도(현행 800만원)를 초과 지원할 수 있으며 호당 10만원 미만은 제외
- 융자조건
  - 금 리 : 년 5%

**축산경영과 소관**

**〈기본방침〉**

- 전업양축농가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확립
  - 기반조성, 축사, 자동화시설 분뇨처리 등 종합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 축산단지, 협업조직화, 가축계열화 등 생산구조의 조직화를 적극 추진
  - 축산입지확보, 부업농의 조직화로 규모화 및 생산·가공·유통의 통합경영으로 생산성 극대화
- 기타 가축의 생산 및 유통, 축산기자재생산시설 현대화 등 지원으로 구조개선조기완료

**전업농육성 및 생산비 절감목표**

구		분	'93	'97	2001
전업농 육성	한우	농가수	5,430호	12,000	18,000
		(두수비율/ 농가비율)	(12.6/1.0)	(30.0/4.0)	(60.0/12.0)
	젖소	농가수	4,500	6,500	10,000
		(두수비율/ 농가비율)	(36.1/16.0)	(50.0/33.0)	(75.0/60.0)
돼지	농가수	2,560	4,000	5,000	
	(두수비율/ 농가비율)	(47.7/3.6)	(70.0/13.0)	(80.0/33.0)	
닭	농가수	1,080	1,800	2,100	
	(두수비율/ 농가비율)	(49.5/0.6)	(70.0/1.7)	(80.0/3.2)	

생산비 절 감	한 우(400kg)	2,230천원	1,700	1,280
	우 유(1kg)	428 원	335	264
	돼 지(90kg)	124천원	103	97
	산란계(10개)	513 원	435	415
	육 계(1kg)	983 원	830	765

※ 전업규모: 한우번식 30두·비육 100두, 젖소 30두, 돼지 500두, 닭 2만수이상 규모를 말함.

## 1. 닭 경쟁력제고사업

### 가. 사업의 목적

○양계농가가 경영의 규모화, 자동화와 환경개선 및 기술향상을 위해 희망하는 사업을 종합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함

### 나.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음의 모든 사업을 종합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

—기반시설, 축사시설, 급이·급수시설, 환경제어 시설, 부화시설, 계분처리 장비 및 시설 등 관리기 계·기구

—다만, 부지 및 가축사육비, 경영비는 제외됨

○사업기간: '94.12말까지(1년)

○사업비 지원조건

—간이축사 설치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비의 편중지원 및 과도한 투자의 방지를 위하여 기지원금(용자잔액기준)을 포함하여 개인은 1인당 2억원, 법인은 자본의 200%, 축협 등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 한도내에서 지원함  
단, 종축생산시설(종계장, 부화장)은 사업규모, 능력 등을 감안 사업비 증액 지원가능

○용자조건

—재 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축산발전 기금

—지원조건: 3년거치 7년균분 상환(금리 3~5%)

—지원비율: 70% 용자, 30% 자담(별첨 지원

기준 참조)

### 다. 사업 대상자

○대상자

—닭(육계, 산란계)을 사육하는 농가 또는 종계장 및 부화장 경영자

—영농조합법인, 축협, 자생적인 협업체 등

○대상자 구비요건 및 우선순위

〈전업농, 종계장 및 부화장〉

—3년이상 양계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

—농과계 졸업생 또는 후계자는 1년이상 닭을 사육한 경험이 있는 자

—종계장 및 부화장은 시·도지사에 등록되어 있는 자

—대상자중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할 사항

·자금지원 받은 후 2년내에 3만수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자담 능력이 있는 농가

·계열화사업 또는 수출용 닭고기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자

·현장훈련 실시, 시범농장으로 개방 등 다른 양계사육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자

·전산관리 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자

〈축협, 법인 협업체 등〉

—축협, 영농조합법인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법인

—양계사업을 목적으로 5인이상의 농가가 회칙(규정 등)을 규정하고 운영하는 협업체

—다음의 경우에 우선지원

·공동구매, 공동출하, 공동방역 등 조직의 응집력이 좋은 협업체

·공해문제 등으로 민원발생소지가 적은 입지에 설치코자 하는 조직

·기술수준이 높고 경영관리의 현대화(경영일지기록, 전산화 등)를 도모하는 조직

※ 조합, 법인, 협업체 등 조직의 구성능가는 개별 농가에 우선하여 지원 가능

## 라. '94 지원계획

구 분	축발기금	농특회계	계
	백만원		
경 기	4,402	1,528	5,930
강 원	2,935	1,019	3,954
충 북	1,957	679	2,636
충 남	4,076	1,415	5,491
전 북	2,446	849	3,295
전 남	4,631	1,607	6,238
경 북	6,522	2,264	8,786
경 남	4,761	1,653	6,414
제 주	880	306	1,186
계	32,610	11,320	43,930

\* 농특회계의 용자종결기한 : '95. 3.31까지

## 마. 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희망자는 사업장 관할 시·군에 사업계획서 제출

○ 시장, 군수는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등을 검토후 사업계획서를 농어촌발전 심의회 및 축산분과위에 상정

○ 농어촌발전 심의회 및 축산분과위는 사업별, 대상자별 우선 순위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되, 닭사육농가 대표가 2/3 이상 참여하는 축종별 실무협의회가 실질심사, 선정

## 바. 사업추진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사육규모에 적합한 사업만 인정하여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되, 인력절감 및 생산성향상을 고려하여 자동화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한다.

— 돈사시설의 적정면적 산출은 “축사표준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산출

— 관리자, 창고, 기반시설 등은 축사시설비에 포함하여 지원

— 축산폐수 및 축산공해 시설, 장비지원사업은 『축산공해방지시설계획』에 의거 지원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93.12월 기 시달한 '94 축산발전사업계획 참조

## 사. 사업비지원

○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사업비는 축사시설개선 사업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음

— 분뇨처리시설, 장비구입자금과 축사시설개선 자금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용

— 농특회계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고 부족할 경우 축산발전기금으로 추가 지원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사업 착수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액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지원

○ 사업비는 사업별 지원기준에 명시된 지원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용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3자담보,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보통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2. 축산단지조성사업

### 가. 사업의 목적

○ 사료 및 기자재의 공동구매, 생산물의 공동판매, 공동방역 등 협업체제의 구축, 폐수처리시설의 공동이용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관리노력의 분담 및 시설의 효율적 배치에 의한 생산성 향상 을 도모

### 나.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

○ 다수의 농가가 공동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집단사육지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자금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임. 다만, 부지 및 가축 구입비,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간이 축사 설치시에도 제외됨.

○ 지원조건

— 사육기반시설과 조사료생산시설·장비는 반드시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함

— 사육기반시설중 진입로개설, 목도개설, 용수개발과 조사료생산장비구입비 및 분뇨 운반장비 구입비는 단지의 공동사업이 아닌 개인사업일 경우

보조비율중 20%를 융자전환함

-사업비의 편중지원 및 과도한 투자의 방지를 위하여 개인은 1인당 3억원, 법인은 자본금의 200%(법인소속 개인에 대한 지원은 별도), 축협 등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 한도내에서 지원함

-지원은 축종별 지원기준(개인 및 공동)에 의함.

• 단, 기반조성사업중 진입로개설과 전력인입은 단지규모 10ha(돼지 15천두, 닭 150천수사육 기준)당 한우·젓소는 0.5km 닭·돼지의 경우 1km(단지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증감지원 가능), 용수개발은 1개공을 한우·젓소의 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축사공해방지시설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융자조건

-재 원 : 축산발전기금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균분상환(금리3~5%)

### 다. 사업대상자 및 구비요건

◦대상축종 : 한우, 젓소, 돼지, 닭

◦대상자

-부지를 확보하고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  
-기 조성된 단지중 규모확대 등 사업변경으로 추가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지

-기존 집단사육 지역을 단지화 하고자 하는 농가

◦대상자 구비요건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로 단지를 구성

-단지규모는 한우·젓소 3호이상, 돼지·닭은 5호 이상이 참여토록하고, 호당규모는 가급적 전업규모 이상일 것

-단지의 구성원중에는 과거 5년간 동일 축종을 전업규모 이상으로 사육한 경험자가 있을 것

-다음의 단지에 우선지원

◦축종별로 사육입지 조건이 좋은 단지(한우와 젓소는 사육장 및 조사료생산 기반규모가 크고 용수개발 등의 경비가 적게드는 곳, 양돈·양계단지는 분뇨처리 등 공해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로 예상되는 단지 등)

◦지분이 평등한 단지

◦지방비를 많이 확보한 단지

◦단지 구성원의 호당 사육규모가 전업규모 이상인 단지

◦구성원의 응집력이 좋은 단지(법인 또는 협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단지, 공동구매·출하, 공해방지시설의 공동설치 등의 정관, 회칙, 운영규정을 정한 단지 등)

◦신규단지, 현재조성중에 있는 기존의 단지, 기존집단사육 지역단지 순으로 지원

### 라. '94 지원계획

◦지원사업비 : 45,585백만원('93년도 2년차용자 및 '94신규조성단지사업비)

- '93축산단지 2년차 소요분 배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93 선 정 단 지			비 고	
	사업량	기지원액	'94지원		
개소					
경 기	3	2,100	2,100	4,200	양평, 이천, 용인
강 원	-	-	-	-	-
충 북	1	700	700	1,400	옥천
충 남	2	1,400	1,400	2,800	논산, 당진
전 북	3	2,100	2,100	4,200	정읍, 옥구, 완주
전 남	5	3,500	3,400	6,900	화순, 무안, 영암, 함평, 해남
경 북	3	2,100	2,100	4,200	선산, 영풍, 금릉
경 남	3	2,100	2,100	4,200	양산, 함양, 함안
제 주	3	2,100	2,100	4,200	북제주(3)
계	23	16,100	16,000	32,100	

※ 1. 전남도 해남, 북일 낙농단지는 총 13억원중 '94년도에 6억원 지원

2. 재원 : 축산발전기금(기지원액중 지방비 지원은 제외된 금액임)

◦ '93년도 2년차사업분(23개소)은 개소당 7억원을 기준으로 융자지원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기존단지의 경우는 추가 사업계획(당초계획대비)

의 타당성 검토 후 '93년도 사업 및 '94신규단지 사업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조정지원 할 계획임

○ '94년도 신규단지의 보조, 용자사업비는 대상자 선정후 단지별로 확정코자함

-1년차 : 보조지원 해당액(지방비는 자체확보)과 용자소요액의 일부지원(예산범위 내에서 축종별로 일정액지원)

-2년차 : 용자 총 소요액중 1년차 지원 잔액지원

### 마. 대상자 선정방법

○사업희망자는 시·군에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농발심의위원회 축산분과위에 상정

○농발심의회는 지원요청 단지의 민원발생여부, 공해방지시설설치, 구성원용집력, 대표자의 지도력, 단지의 사업성, 담보제공능력 등을 종합심사

○시·군은 농발심의회에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지의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

○도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추진가능한 단지의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부에 제출

-지방비 부담계획이 첨부되어야 함

### 바. 사업추진 유의사항

#### (1) 기반시설

-진입도로, 전기인입 및 용수개발 등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기금 지원

#### (2) 사육시설

○사업계획은 사육규모에 적합한 계획만 인정하여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되, 인력절감 생산성향상을 고려하여 자동화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한다.

-축사시설은 용도별 사육두수등을 감안 적정면적을 검토하고 사료창고등은 축사시설비에 포함 지원

-축사부지 정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사시설사업비로 지원가능하나 과도한 경우는 적정 면적

으로 조정 인정

#### (3) 조사료생산기반(한우, 젓소)

-한우 및 젓소 경쟁력제고 사업 참조

#### (4)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장비, 건물 등)은 가축사육두수(수수), 축분 발생량 등을 감안 적정 수준으로 지원(축산공해방지시설계획 참조)

#### (5) 기계, 기구, 장비

-분뇨처리 및 조사료생산용 트랙터, 소독장비 등 단지내 양축전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기계, 기구, 장비 구입비 지원 가능

### 사. 사업비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사업 착수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액은 사업진척도에 따라 지원

○사업비는 사업별 지원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용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3자담보,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보험 제도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사업기간은 2년으로 하고 축산발전기금 집행은 시장·군수의 사업추진실적(기성고) 확인결과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관리 한다

○'93년도 선정단지의 경우는 우선 단지당 7억 원씩(해남 낙농단지 6억원) 지원하니 축협중앙회장은 자금 배정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고

○기존단지중 사업확대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에서 기 용자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단,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지원 계획임

○기존 집단사육지역을 단지화 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여부, 주민과의 마찰해소 등을 감안하고 지원사업비 집행시 증빙자료 기록유지 등으로 자금이 전·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사업전·후 변동사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 3. 가축계열화 사업

#### 가. 사업의 목적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 어린가축, 사료 등 생산원자재와 사양기술을 제공하고 생산물을 수집·가공·판매하는 통합경영으로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의 양축경영 안정을 도모

#### 나. 지원내용

○생산에서 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계열화에 필요한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가능  
-시설예시 : 도축시설, 가축사육, 가공, 냉동, 판매 등 관련시설  
\*다만, 부지 및 가축구입비, 경영비는 제외  
○계열화에 참여하는 농가는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비 중에서 일반농가에 비해 우선 지원토록함

#### 다. 지원대상자

○대상자  
-신규로 계열화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 및 생산자단체(조합, 자율조직) 등  
-기존 계열화사업자중 추가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대상자 구비요건  
-계열주체는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자체 확보하거나, 임차계약 또는 계열화에 참여시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투자계획상의 자담분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자  
○자담분 : 계열화이후 신규투자액의 일정을 (기 투자분 제외)  
-사업지원 우선 순위  
○계약생산된 축산물의 가공·유통능력이 우수한 사업자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체계를 갖춘 사업자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 라. '94 지원계획

○'94 예산액 : 280억원(돼지·닭 : 농발기금 175, 한우 : 105)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 예산액 조정 예정  
-계열화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시설비의 70%용자 지원  
○재원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돼지, 닭) 및 축발기금(한우)  
○지원조건 : 계열주체에 따라 지원조건 차등화  
-생산자단체주도 계열화사업자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년리 5%  
-민간기업 주도 계열화사업자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년리 8%

#### 마. 사업신청 절차

○계열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계열농가 확보 등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군수를 경유 도지사에 신청  
○도지사는 계열화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가 계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지도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 신청

#### 바. 대상자선정

○농림수산부는 신청된 사업계획 검토후 대상자 확정  
-사업자당 지원액은 사업계획 검토후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 사. 사업추진 유의사항

○계열화사업 대상가축 및 사업규모  
-대상가축 : 한우, 돼지, 닭(산란계, 육계)  
-규 모 : 사업 승인후 5년이내에 한우 3천두 이상, 돼지 3만두이상, 닭 100만수 이상 규모로 계열조직화  
○계열화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자재는 계열주체가 직접 확보하거나 기존시설을 장기임차

또는 계열조직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기반시설: 도축장, 종축 생산시설, 가공시설, 판매시설 등

-자 재: 사료, 어린가축(병아리, 자돈, 송아지 등), 약품 등

○농특회계 자금은 당해년도내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임

-단, 융자금의 융자종결기한은 '95. 3.31일까지

### 아. 사업비지원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소요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착수 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진척도에 따라 지원

-예산 집행은 농특회계 집행에 관한 제규정 및 축협여신관리규정에 의함

○융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사업자 편익을 제공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 4. 축산기계화사업

### 가. 사업의 목적

○축산경영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계·기구의 구입자금 지원으로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나.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축산용 기계·기구 구입비 지원

-가축사육에 필요한 축산전용 기계·기구

-기계·기구 품목선정은 농가 스스로 선택

○사업비 지원조건: 70% 융자, 30% 자부담으로 추진

-사업비의 편중지원 및 다른 사업에 의한 같은 품목의 중복지원 불가

-융자조건: 2년거치 3년상환, 년리 5%

### 다. 사업대상자 및 구비조건

○대상자: 전업농가, 전업농 지향농가

○대상가축: 축산법에서 규정한 전가축

○대상자구비조건

-전업농 또는 가족노동력 위주의 전업농을 지향하는 농가

-다음의 농가에 우선

•사육축종의 전문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계, 기구를 구입코자하는 농가

•수출용 축산물생산에 참여하고 있는자

•현장훈련실시 및 축산관련 교육이수자

•전산관리 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향상을 기할 수 있는자

### 라. '94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농특회계	3,934	820	1,100	3,424	1,724	2,728	3,194	2,796	280	20,000

\* 융자금의 융자종결기한: '95. 3.31일까지

### 마. 대상자 선정방법

○분기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사업희망자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지원받고자 하는 시기 명시)

○농발심의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

-분기별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분기별 자금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차순위 농가는 다음 분기로 순연됨

○당해 분기에 기계·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다음 순위 농가에게 지원이 승계됨

○분기별사업자금 지원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

## 바. 사업추진 유의사항

### (1) 자동화시설

—사업계획은, 사육규모에 적합한 규모만 인정하여,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되, 인력절감 및 생산성향상을 고려하여 자동급이·급수기, 환기, 선란 등 자동화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지원

### (2) 기계, 기구

—사육축종의 전문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착유기, 냉각기, 베일러 등 축산전용기계, 기구의 구입비로만 지원가능(단, 차량은 제외)

## 사. 사업비지원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사업비는 '94지원계획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음

○융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보험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사업비는 농특회계 관리제규정 및 축협여신관리규정 등 관계규정이 정한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사업추진실적(기성고) 확인결과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관리 한다.

## 5.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사업

### 가. 사업의 목적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가축사육 및 축산물 생산의 기초가 되는 축산기자재의 품질향상으로 축산업 구조개선의 조기달성

### 나. 사업내용과 지원조건

○축산전용 기자재 생산을 위한 기계·시설 등 자금지원

—자동 급이·급수장치, 착유기 등 파이프라인, 자동환기 장치, 자동케이지 시스템, 축분처리기, 기타전문기자재 생산용 기계 및 시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우수생산업체에 대해 동설비자금의 70% 융자, 30%자부담

○지원조건: 3년거치 7년상환 년리 8%

## 다. 사업대상자 및 선정기준

○대상자: 축산기자재 생산업체

○대상자 구비조건

—기자재 생산공장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한자

—전문화된 특정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을것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수입기자재와 경쟁이 가능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연구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

—기술축적이 가능하고 제품의 규격화 및 A/S가 양호한 업체

## 라. '94지원계획

구 분	사 업 량	축 발 기 금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	10개소	2,100백만원

—재원: 축산발전기금(개소당 210백만원 기준)

## 마. 대상자 선정방법

○사업희망자는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것

○축산기자재협회는 회원, 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우선 순위를 정해 농림수산부에 보고

○농림수산부에서는 대상자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

## 바. 사업추진 유의사항

○표준축사 설계도에 적합한 축산시설 및 기자재를 생산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부지구입 및 운영비로는 자금사용 불가

○가급적 기존 공장을 활용토록하고 자동화설비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공장신축 및 증·개축으로도 자금사용가능

○새로운 기자재를 개발코자하는 경우는 표준축사설계도 및 현장 여건에 맞게 개발토록 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발 할 것

### 사. 사업비지원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자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의 10% 범위내에서 사업착수금으로 우선 사용  
- 나머지는 사업진척도에 따라 별도 지원
- 사업비는 축산전용 기자재생산을 위한 기계시설 등 소요자금의 70% 용자지원 30%는 자부담
-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타사업 명목으로 사용불가
- 용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 담보, 제3자담보,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담보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축산발전기금의 지원은 예산 회계법과 보조금의 여신관리에 관한 법률, 축협의 여신관리규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 6. 축산경영진단사업

### 가. 목적

- 양축농가별 경영관리 및 수익성 분석 등으로 경영지표 설정
- 경영지표에 의한 경영개선으로 생산성향상 및 생산비 절감

### 나. 추진방향

- 양축농가의 경영진단과 생산비 분석, 지도에 의한 농가경영 개선 유도
-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지도계획수립 추진
- 자동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부분별 우수성공 사례를 발굴 농가교육 자료로 활용
- 농가별 일지기록 중심지도에서 점차 전산화 운영 중심체제로 전환 유도
- 정부의 축산업구조개선 사업의 실용성 거양을 위한 대농가 상담 및 전문지도

### 다. 사업계획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장
- 사업기관 : 도 및 생산자단체(축협,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 대상축종 : 비육우, 번식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6종)
- 사업기간 : '94. 1.1~'94.12.31(1년간)
- 사업비 : 181백만원
- 사업비용도 : 경영진단 일지제작, 교육 및 교재대, 협의회비, 지도여비 등
- 도 및 생산자단체(낙농육우, 양돈·양계협회) 경영진단사업추진 및 협의회 운영비는 개소당 10백만원을 기준하되 사업자의 계획에 의거 축협중앙회장이 예산범위내에서 증감조정 지원 가능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가축개량〉

### 〈기본방향〉

- 가축의 유전능력 향상을 통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 능력검정 확대 및 내실화
- 국내외 우수 유전자원의 최대 활용
-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기술 개발 보급
- 가축개량총괄업무는 총괄기관 조직 정비시까지 농림수산부에서 담당

### 〈산란계〉

대상형질	1992	1997	2001	년간개량량
성계생존율(%)	90	91	92이상	0.2
초산일령(일)	158	156	155	△0.3
산란율(%)	77	80	82	0.6
산란지수(개)	269	278	285	1.8
평균난중(g)	62	62	62	0.00
사료요구율	2.52	2.41	2.30	△0.02
체중(g)	1,927~2,306	1,864~2,253	1,800~2,200	△14.1~11.8

※ 체중: 앞부분 백색계, 뒷부분 갈색계

### 〈육용계〉

대상형질	1992	1997	2001	년간개량량
육성율(%)	96	97	98이상	0.02
6주체중(g)	1,720	1,910	2,100	42

7주 체중(g)	2,150	2,325	2,500	39
사료요구율(0주)	2.01	1.91	1.80	△0.02

## 7. 닭 능력검정 사업

### 가. 목적

- 종계자질개량 및 능력향상
- 우량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계종선택지표 제공
-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나. 기본방침

- 검정요원의 전문화
- 검정방법의 공정화
- 검정결과의 공표
- 검정시설의 현대화 및 장비의 자동화

### 다.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대한양계협회
- 대 상 :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소
- 사업기간 : '66-영구
- 사업량

검정소검정	일반검정
15천수(산란 3, 육용 12)	도입 및 국내분양 종계

- 지원내역

구분	사업량	단위	보 조				용자 (축발 기금)	자담	합계
			국비	지방비	축발기금	소계			
사료비 시설및 장비					백만원				
					50	50			
					543	543			
계					593	593			

### 라. 세부실시요령

#### (1) 검정요령

- 닭 능력검정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87-42

호 '87. 8.21)에 의함

#### (2) 닭 검정위원회 운영

- 검정란의 선발 및 배치
- 검정기록의 분석 평가
- 검정지도 및 개선방안 도출

#### (3) 검정성적 공표 등

- 신계종을 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수입여부 결정
- 검정소 검정결과는 축산관계 전문지 등에 공표

○ 일반검정결과는 신청자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 종계장관리에 협조

#### (4) 검정시설 현대화 및 장비 자동화

- 설계, 입찰, 정지 등 조속한 공사착수로 '94년 내 완료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실적 및 공정에 따라 자금지원

#### (5) 보고 및 감독

- '94 닭 능력검정 세부계획 보고('94 3.10까지) : 대한양계협회
- 사업추진실적보고(매분기 익월 20일까지) : 대한양계협회
- 대한양계협회장은 각종 보고서 관련도지사에게도 보고
- 경기도지사는 년2회 이상 관련사업 현지 확인 점검

## 8. 재래닭의 고품질 육용화사업

### 가. 목적

-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
- 재래닭의 고유 유전자원 보전

### 나. 기본방침

- 재래닭 고유의 육질을 유지하면서 생산능력 향상
-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의 공동참여로 조속한 성과 가시화

◦ 개발된 재래닭 종계의 농가보급

#### 다.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대한양계협회
- 사업협조 : 국립종축원,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가금학회 및 재래닭 보조연구회 등
- 사업기간 : '94~'97

사업내용	기간
재래닭의 유전적 생산능력 평가 및 가계조성	'94~'95
우량교배조합선발 및 사료급여기준 설정	'95~'96
실용계 사양관리체계 확립 및 육질평가기준 설정	'96~'97

- 지원내역
  - 사업비 : 108백만원
  - 용도 : 가축구입비, 시설비, 재료비, 인건비 등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보조

#### 라. 세부실시요령

(1) 대한양계협회장은 사업협조기관과 협의하여 년차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시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분담

##### (2) 시험축확보

◦ 국내 연구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계 확보

##### (3) 사업비 지원

◦ 축협중앙회장은 대한양계협회장의 요구와 추진실적에 의거 자금 지원

##### (4) 사업관리

◦ 대한양계협회장이 사업계획에 의한 자금지원 및 추진상황 등을 지도, 감독

◦ 시험기간중 생산물은 판매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

##### (5) 보고 등

◦ 년도별 사업세부추진계획 보고('94. 3.10 까지) : 대한양계협회장

◦ 사업추진실적보고(분기 익월 20일까지) : 대한양계협회장

## 9. 국산종계개발지원사업

#### 가. 목적

- 국제경쟁력 있는 국산종계개발 유지
- 외국 종계회사와의 영업경쟁으로 양계농가 부담경감

#### 나. 기본방침

- 민간주도의 닭 육종활동 지원
- 용도별로 1계종 이상 국산종계 개발유지(산란용 1, 육용 1계종 이상)

#### 다.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대한양계협회
- 대 상 : 민간 닭 육종회사
- 사업기간 : '94-영구
- 사업량 : 1개소
- 지원내역
  - 사업비 : 7억원(용자)
  - 용도 : 축사, 장비 등
  -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리 8%

#### 라. 세부실시요령

##### (1) 지원대상자 요건 및 선정

◦ 닭 육종사업 분야만으로 독립회계가 이루어지는 법인체로서

◦ 용도별로 1계종 이상 국산종계를 개발, 유지하는 계획서를 당부에 제출하여

◦ 가축개량협의회에서 계획서의 타당성이 인정된 업체를 선정

##### (2) 지원업체 의무사항

◦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닭경제능력검정에 개발된 계종의 실용계를 매년 출품하여 외국계종과 능력을 비교하여야 함

◦ 자금지원 5년이내에 닭경제능력검정 출품계종 평균수익성(추생추 판매가격기준)의 90% 수준 이상 도달하여야 함

※ 의무사항 이행이 안될경우 지원자금 회수

**(3) 보고 등**

○국산중계개발 추진상황 보고(매분기 익월 20일이내) : 대한양계협회장

**축산물유통과 소관**

**1.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

**가. 축산물 수급조절 사업의 효율적 추진**

**(1) '94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수급전망**

구분	수요			공급			차년 이월
	국내 소비	수출	계 (A)	전년 이월	국내 생산	당년 수입 (B)	
돼지고기	647.9	14.0	661.9	3.9	650.9	(7.1)	661.9 -
닭고기	254.5	-	254.5	3.7	249.3	(1.5)	254.5 -
계란	457.3	-	457.3	2.4	454.9	-	457.3 -

※ ( )내의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입량은 '93, '94년도 수입개방된 냉장육 수입예상량임

**(2) 산지가격안정**

-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한 생산자의 자율적인 사육조절을 위한 대농가 지도 강화
- 소비촉진 홍보강화
- 자율 수매비축·방출의 탄력적 운영

**나. 양계산물 수급조절사업**

**(1) 목적**

- 양계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와 시책의 원활한 수행
- 적정가격 유지로 양계농가 경영안정 및 소비자 보호
-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 기반 구축

**(2) 기본방침**

-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수매에 의한 수급 및 가격안정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농림수산부
-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축협), 정부지정계열화업체, 한국냉장, 계육가공업체 등
- 사업기간 : '94. 1~12
- 사업비 : 축산물 수급조절자금 9,250백만원(축발기금)
- 지원계획

사업명	사업량	지원단가	사업비			계
			보조	가금용자	자부담	
양계산물 수급조절사업			백만원			
육계	백만수 15	원/수 1,550		9,250		9,250
계란	백만개 300	원/개 46		5,800		5,800
				3,450		3,450

○용자조건 : 년리 3~5% (조합 3%), 용자일로 부터 1년간

**(4) 세부실적요령**

추진요령	주관(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계산물 자율 수매비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매시기 : 양계산물이 생산비이하로 하락하여 경영비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수매비축 실시</li> <li>단, 산지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 우선 수매</li> <li>-수매품목 : 육계, 계란</li> <li>-수매장소 : 산지 또는 도계장</li> <li>-수매가격 : 산지가격이 경영비 수준에서 자율수매(양계산물 수매에 따른 손익은 수매주체에서 책임처리)</li> </ul> </li> <li>○사업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자는 수매비축능력(비축 시설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수매비축기능이 있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비축보관능력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및 계열화업체는 농가와의 계약내용과 계열화농가의 명단을 첨부하여 '93. 3월말까지 농림수산부에 추천</li> </ul> </li> </ul>	시·도

<p>—농림수산부는 수매비축기능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량 및 자금 배정을 확정 시달</p> <p>○수매비축 의무 및 지도감독</p> <p>—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자율 수매비축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 및 가격안정상 필요시 정부지시에 의거 의무비축 및 방출</p> <p>—시·도지사는 수매비축 확대를 위한 독려 및 지도감독을 하고 지원자금 용자일로부터 별도 정하는 기간내에 비축실적이 80% 미달되는 대상자는 지원자금 잔액을 회수조치토록 하고 전배대상자를 선정하여 축협중앙회에 통보</p> <p>—축협중앙회장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수매비축실적인 부진한 대상자의 지원자금 잔액을 회수하고 시·도지사가 선정한 전배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한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통보</p> <p>○자금관리: 축협중앙회장</p> <p>—수매비축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금을 자체 수매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수매·판매실적도 별도로 관리</p> <p>○수매비축실적 보고</p> <p>—사업대상자는 수매비축실적을 매 주 시·도지사에게 보고</p> <p>—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별로 매 월 일자별로 집계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하고 축협중앙회에 통보</p>	<p>농림수산부</p> <p>농림수산부</p> <p>시·도</p> <p>축협중앙회</p> <p>축협중앙회</p> <p>시·도</p>
--	---

#### 다. 축산업자조금지원

##### (1) 목적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 홍보등을 통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2) 기본방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 보조

##### (3) 사업계획

○사업주체: 양돈협회·양계협회 자조금관리 위

#### 원회

○사업품목: 돼지, 닭

○사업기간: '94. 1~12

○사업비: 축발기금사업비 200백만원(기금보조 200, 자담 400)

○지원계획

사업명	보조		용자	자담	계
	국고	축발기금			
축산업 자조금 지원	백만원	200	200	400	600
양돈		100	100	200	300
양계		100	100	200	300

○지원조건: 자조금 사업주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의 100분지 50범위내에서 보조

## 2.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가. 계란집하장 설치

#### (1) 목적

-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
- 계란의 수급 조절에 의한 가격안정 도모
- 계란의 상품성 제고로 소득증대에 기여

#### (2) 기본방침

- 계란의 규격별 포장화로 상품성 제고
- 생산농가의 공동출하에 의한 시장 교섭 능력 제고

○계란 수집상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비축사업 병행추진으로 수급조절 기능 강화

#### (3) 기본계획

○사업주체: 시·도 및 축협중앙회

○대상: 축협 및 산란계 계열화 시행 업체, 배합사료 제조업체

—산란계계열화 업체 및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기존의 사육농가와 계약을 해야 하며 상시 사육수가 50만수 이상이어야 함

○사업기간: '94.1~12



○사업규모 및 시설내역(개소당)

부지매입	건 물	차 량	선별기	계
700평	250	2대	1대	—
140백만원	275	20	365	800

※ 부지 및 시설규모, 사업비 등 세부 사업계획은 사업자 형편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사업비 지원내역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용 자	자 담
2개소	800백만원	1,600 (100)	1,120 (70)	480 (30)

—재 원 : 축발기금

—용자조건

- 용자기간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 리 : 3~5% (축협 3%)

(4) 세부추진상황

추진요령	주관(협조)
○민간업체는 시·도지사가 선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추천	시·도
○축협은 축협중앙회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추천	축협중앙회
○사업대상자 추천시 첨부 서류 —사업계획서 및 년차별 수지계획서 —민간업체는 사육농가와 의 계약서 및 계약농가별 사육수수 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자금집행 및 관리는 축협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축협중앙회
○보고 —대상자 추천보고 : '94. 3.31일 한 —사업 추천 실적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완료 보고 : 완료후 10일 이내	시·도, 축협중앙회

**초지사료과 소관**

**1. 사료수급**

**가. 사료시책 추진방향**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기본방향〉**

- 사료원료수급 및 사료가격안정
- 사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사료의 품질보장과 안전성 확보
- 조사료생산기반조성 및 성력화

**나. 중점추진시책 내용**

(1)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

- 사료용보리 수입 등 사료원료 수입의 다양화
- 사료관련 세제(관세 및 부가가치세)개선 추진

(2) 사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사료제조업의 허가제→등록제 전화
- 사료관리법 개정 : '93정기국회 제출 계류중
- 사료제조업체 시설자금 지원

(3) 사료품질관리 강화

- 사료검정기관의 시설보강 및 기능강화
- 사료검사원의 기술교육
- 사료품질관리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실시

(4) 조사료생산기반조성 및 성력화 추진

-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및 사료작품재배지원
-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조성 등 기계화촉진
- 벗짚 등 부존사료자원의 개발이용
- 벗짚수거기 보급 및 벗짚의 암모니아처리지원

(5) 한국형 시범축산단지 및 관광목장조성

**나. '94사료수급계획**

**배합사료 생산계획**

구 분	생산량	%	비 고
축 우 용	천톤		
	4,967	36.9	
	한육우용	2,860	21.3
낙 농 용	2,107	15.6	
양 돈 용	4,543	33.8	
양 계 용	3,480	25.9	
산 란 계	2,080	15.5	
	육 계	1,400	10.4

기 타 용	460	3.4	
기타가축	361	2.7	
양 어 용	99	0.7	
계	13,450	100.0	

## 가축위생과 소관

### 1. 축산물 위생

#### (기본방침)

-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
- 축산물 검사원 교육
- 축산물 작업장위생관리 강화
- 위생도계육 유통정착
- 원유위생관리 강화
- 원유검사장비 지원
- 축산공해 방지시설
- 축산물 위생용기 관리개선
- 원유중 세균수 및 체세포수 측정기기 검증추진
- 시도의 국비수의직 공무원 인건비 배정

#### 가.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

##### (1)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

###### (가) 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축산업 발전 및 공중보건향상 도모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정착으로

양축농가 소득보호

—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강구·추진

○ 국내산 육류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

###### (나) 추진방향

○ 축산물내 항균제·합성항균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강화

— 동 검사결과 잔류물질 검출시 잔류방지 제도

및 규제강화 병행 등 특별관리 실시

○ 유해잔류물질 검사실시 재료비 및 검사장비 등 검사기반 구축 지원

###### (다) 추진 계획

○ 실시기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서울시, 직할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는 축산진흥원)

○ 사업기간: '94. 1~12월

○ 사업량: 45,000건

소	돼지	닭	계	비	고
11,000건	23,000	11,000	45,000		

###### ○ 검사대상

— 대상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대상물질: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설파제) 등 유해잔류물질

###### ○ 검사방법

— 축산물작업장에서 채취된 수축의 근육사료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여부 판정(스크리닝 검사: EEC4-plate method 적용실시)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보건사회부 고시)중 “식육중 잔류물질 허용기준 및 축산식품중 잔류물질 시험법”에 의거 정량분석 등 검사실시

###### ○ 검사결과 조치

— 검사결과 유해잔류물질 검출시 해당가축 출하 농장에 대한 잔류방지 제도 및 규제검사 강화 등 특별관리, 허용기준 초과육에 대한 폐기처분 등 제재조치

•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1차검사)결과 잔류(양성)판정시: 해당가축 출하농장 추적에 의한 특별관리 실시→가축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농가제도 및 가축 재출하시 2차검사(규제검사) 실시

• 2차검사: 특별관리 대상농장의 재출하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 실시(검사완료시까지 출고보류 등 유통 제한)

— 잔류검사 결과를 분석,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강구·추진

###### ○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유해잔류 물질검사 -검사재료비	건 45,000	천원 40,500 (47%)	45,000 (53%)	85,500 (100%)	국비예산중 축산물내 잔류물질 검사 기술교육 실시 예산 3,000천원 포함

## (2) 국내산 및 수입 축산물중 유해잔류물질 공동조사사업

### (가) 목적

- 국내산 및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축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 보호
- 축산식품에 잔류가능한 동물약품, 농약 및 환경오염물질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잔류물질별 최대 잔류 허용한계치 설정으로 사용규제 및 감시강화 등 잔류방지대책 수립

### (나) 추진방향

- 국내산 및 수입 축산물의 잔류물질 규제검사 및 모니터링
  - 농림수산부: 잔류물질 조사결과 평가 및 잔류방지대책 수립
  - 국립동물검역소: 수출입 축산물 잔류 유해물질 검사 및 결과 보고
  -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잔류물질 조사(모니터링)계획 수립, 정밀조사 및 결과 종합보고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국내산 축산물중 항균물질 1차 스크리닝, 설파제검사 및 2차 정밀조사료 발송
- 유해잔류물질 최대 잔류허용한계치 설정 및 규제검사 강화
  - 허용한계 위반에 따른 원인조사 및 지도·홍보
  - 동물약품 등 잔류가능한 화학물질 사용규제 및 검사강화
- (다) 추진계획
  - 실시기관: 국립동물검역소,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사업기간: '94. 1~'94.12월

## 나.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강화

### (1) 목적

- 축산물의 위생처리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
- 작업장의 위생처리시설 확충으로 축산물 수급 원활 및 환경위생 기여

### (2) 추진계획

- (가) 축산물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실태 점검
  - 대상업소: 도축장, 도계장, 집유장
  - 점검
    - 시·도 : 년2회 이상
    - 농림수산부: 년1회 이상
  - 점검 착안 사항
    - 허가내용 및 시설기준(지육 및 내장검사대 설비 중점)
    - 작업장내 위생관리 상태
    - 도살·해체 수수료 적정 징수 여부
  - 점검결과 조치: 시·도지사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시설점검 결과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 (나) 도축장 권역화 계획에 의한 통폐합 대상 도축장의 중점 지도 관리
  - (다) "축산물작업장허가관리지침(위생 15575-712호, '93. 7.14)"에 의거 도축장, 도계장의 허가관리 철저
  - (라)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
    - '94년말까지 작업장별 시설기준에 의한 적정 시설 설비
    - 수축 및 축산물검사기준에 의한 검사 철저 이행
- (마) 도축부산물 처리시설 자금지원
  - 사업주체: 시·도지사
  - 지원대상: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털, 지방, 내장내용물 등을 원료로 하여 사료 또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축장 경영자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시·도지사의 추천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
    - 자금관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사업기간 : '94. 3~'94.12
-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물량	지원 단가	개소당 사업비	재원별			용자 비율
				계	촉발기금	자담	
도축부산물처리시설	개소 7	300	430	3,010	2,100	910	70%

- 용자조건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5%
- 세부 실시요령
  - 시·도지사가 '94.3월말까지 추천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이 결정
  - 사업 대상자 추천시 별첨 서류
    - 사업계획서(자체 자금 투자내역 포함)
    - 시·도지사 검토 의견서
    - 도축장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
    - 최근 2년간 월별 도축 실적
    - 도축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태
  - 기타
    -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추천 서식은 추가 시달
    -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대상자 확정시 시달

## 다. 위생도계육 유통정착

### (1) 목적

- 도계장시설 현대화로 위생도계육 공급 및 닭고기 유통구조 개선
- 도계과정에서 발생되는 우모, 내장 등 부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공해 방지 및 부산물의 자원화 활용

### (2) 기본방침

- (가) 위생 도계육 유통지역 확대지정
  -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 대상 지역 지정 및 작업장 설치규정 (농림수산부 고시 제90-10호, '90. 3.12)에 의거 유통지역 확대 추진
    - 닭 : 전국 읍단위이상 지역을 유통지역으로 고시
    - 오리 : 시·도지사의 의견을 검토, 유통지역 고시 확대

- (나) 도계육 반출 및 유통질서 확립
  - 축산물위생처리법 규정에 의한 도계장에 한하여 타시도 냉장(동) 반출 허용
  - 식육운반차량으로 도계육 운송
  - 반출시 반출통보서 및 검사증명서 발급 철저히 영세·노후한 도계장의 통폐합 정비 유도
- (다) 영세·노후한 도계장의 통폐합 정비 유도로 도계 경영 활성화
  - (라) 주간도계 및 자가도계체제 전환으로 검사업무 강화
  - (마) 도계장 경영 및 도계육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3) 자금지원계획

- (가) 사업주체 : 시·도지사
- (나) 지원대상 : 도계시설(가공, 비축시설 포함)개선 및 도계부산물처리설비를 하고자 하는 도계장 경영자
  - (다)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시·도지사의 추천에 의거 농림수산부 장관이 결정
    - 자금관리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라) 사업기간 : '94.3~'94.12
  - (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물량	지원 단가	개소당 사업비	재원별			용자 비율
				계	촉발기금	자담	
도계장시설현대화	개소 5	700	1,000	5,000	3,500	1,500	70%
노계도계처리시설	1	1,400	2,000	2,000	1,400	600	70%
도계부산물처리시설							
- 개별 시설	3	300	430	1,290	900	390	70%
- 공동 시설	1	1,400	2,000	2,000	1,400	600	70%
계	10			10,290	7,200	3,090	

- 용자조건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5%

### (4) 세부 실시요령

- (가) 시·도지사가 '94.3월말까지 추천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이 결정
- (나) 사업대상자 추천시 첨부 서류
  - 사업계획서(자체 자금 투자내역 포함)

(단위: 백만원)

- 시·도지사 검토 의견서
- 도계장 대기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
- 최근 2년간 월별 도계 실적(자가, 위탁 구분)
- 도계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태(부산물처리시설 해당자에 한함)

(다) 기타

-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추천 서식은 추후 시달
-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대상자 확정시 시달

## 라. 축산공해 방지시설

### (1) 사업의 목적

-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
- 양축농가 및 축산단체에 대한 축산공해방지시설 자금 지원으로 축산경영비 절감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도모

### (2) 사업의 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내용
- 〈농가 개별사업〉
  - (간이)정화시설: 저장액비화, 퇴비사, 톱밥발효돈(우)사, 톱밥토양 여과상, KDST 정화조 등
  - 비료화시설: 통풍식, 교반식, 건조식 분뇨발효시설(부산물비료제조시설 포함)
  - 퇴비처리장비: 교액분리기, 스키드로드, 소형 톱밥제조기, 분뇨건조기 등
- 〈단체 공동사업〉
  - 축분발효시설: 가축분뇨를 이용한 부산물 비료제조업 시설 및 장비
  - 분뇨공동저장탱크: 가축분뇨 공동저장시설 설치비
  - 분뇨운반장비: 바큇카(Vacuum Car), 살포차량, 교반기 등
  - 톱밥제조시설: 대형톱밥제조기, 포장시설, 건축비 등
  - 정착촌 구조개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축분발효시설, 공동저장 탱크 등)
- 지원조건

구 분	개소당 사업비	지 원 율(%)			재 원	
		용자	보조	자담		
개별시설	간이정화시설 (법규제이하)	4.2	50	50	-	농특, 축발기금
	정 화 시 설 (신고대상)	10	50	50	-	"
	비료화시설①	100	70	-	30	"
	비료화시설②	50	70	-	30	축발기금
	퇴비처리장비	10	100	-	-	농특회계
공동사업	축분발효시설	1,000	20	50	30	농특, 축발기금
	분뇨운반장비	30	20	50	30	농특회계
	톱밥제조시설	300	70	-	30	농특, 축발기금
	분뇨공동저장탱크	50	20	50	30	"
	정착촌구조개선	300	-	100	-	농특회계

※ 용자조건: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3%

### (3) 사업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

- 대상지역: 전국 일원
- 대상자
- 〈개별시설〉
  -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 신고·허가대상농가
  - 정화시설: 신고대상 농가
  - 간이정화시설: 법 규제미만
- ※ 신고대상: 소사육시설 350~1,200㎡ 미만, 돼지사육시설 250~1,400㎡ 미만, 닭사육시설 500㎡ 이상
- 허가대상: 신고대상 이상
- 규제미만: 신고대상 미만중 소11두 이상, 돼지 51두 이상 사육농가
- 〈단체공동시설〉
  - 지역축협, 축산단지, 계열주체, 영농조합 법인 등 협업체, 정착촌(단, 톱밥제조 시설은 산림조합이 포함됨)

## 2. 가축방역사업

### 가. 가축혈청검사 사업

#### (1) 목적 및 필요성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책수립을 목적으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축의 혈청을 검사하여 면역항체가와 질병감염여부, 및 질병발생동향을 파악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시기지도 및 질병방제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

## (2) 사업시행기관

○가축위생연구소 : 진단액 등 생산 및 기술지도

○가축위생시험소 : 혈청검사실시 및 결과통보와 양축농가 지도

## (3) 검사대상질병 : 19종

○닭 : 뉴캐슬병 (ND) · 산란저하증 (EDS'76) 감보로병 (IBD) · 전염성기관지염 (IB) · 추백리 (SP) · 마이코프라스마병 (MG) · 닭 뇌척수염 (AE) (7종)

## (4) 실시방법

### ① 닭 혈청검사

○검사대상선정

—종계장에서 직접채혈 또는 이곳으로부터 도계장에 출하된 닭을 선정 채혈하되 1개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가검물채취 : 관내 양계농가에서 검사요청시 진단액 부족으로 인한 검사거부사례가 없도록 매월 균분 실시

## 2. 양축자금 지원

### 가. 사업의 목적

○양축가에게 저리의 양축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양축가의 경영비 절감 및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

### 나. 사업내용과 지원조건

#### (1) 자금의 용도

○양축농가의 사료구입비, 동물약품구입비 등 가축사양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여 단기지원

#### (2) 지원조건

○지원대상 : 가축사육 여건을 갖춘 양축농가

○호당 지원한도 : 800만원 이내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년이내로 함

—대출금 상환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 1년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금리 및 이자징수

—금리 : 년 5%

—이자징수 : 원금상환일에 후취

### 다. 지원절차

#### (1) 일반양축자금

○지원대상자 추천

—양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양축가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작성, 관할축산계장(또는 축협조합대의원)에게 신청

—축산계장은 축협조합원 여부에 불구하고 조합의 자금배정의 범위안에서 양축가별 양축규모와 자금사정, 그동안의 양축자금지원 여부 등을 감안 「용자협의회」에서 지원순서와 지원액을 협의 조정하고 양축자금 지원대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대출조합에 제출

—「용자협의회」는 축협조합장이 각 구역별로 위촉하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 읍·면·동의 축산담당공무원 1명, 축산 후계자 대표 1명, 일반양축가 대표 2명으로 구성

—축산계가 조직되지 아니한 지역은 지역은 축협 조합대의원 선거규정에 의한 선거구별로 위 요령에 의거 대의원이 추천

○지원대상자 확정 및 공개

—축협조합장은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이 「용자협의회」를 거쳐 추천한 자중에서 대출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축협간행물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추천자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대출금의 지급

—대출금은 출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제

하지 못하며,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양측자금의 소비자금화를 방지하고, 현금 소지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하여 통장으로 지급하고, 자금 필요시 인출 사용토록 장려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는 용자대상자를 추천한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지원계획 등 홍보

-축협조합장은 지역별 양측자금 배정액,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지원계획을 관내 시·군·구·읍·면·동사무 등에 통보하고 이를 양축농가에게 홍보하여야 함.

(2) 특수목적 양측자금(50억원)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가축사양비,

시설복구비, 자축 구입비 등에 지원하되 사유 미발생시는 축협중앙회장이 일반양측자금으로 전용지원할 수 있음

○지원기준은 별도 시달하는 요령에 의함

라. '94 지원규모(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93(A)	'94(B)	증감(B-A)
조 재 정 자 금	800	1,208	408
한 은 차 입 금	1,040	832	△208
달 축 협 자 금	1,560	1,960	400
계	3,400	4,000	600
운 일 반 양 측 자 금	3,350	3,950	600
용 특 수 양 측 자 금	50	50	-

양계

대 탄 생

양계인을 위한 납플

## 납플생산전문업체

아직도 수입품 납플만을 고집하십니까?  
金道の 납플을 사용해 보십시오.




최신형 장비로 대량생산 공급하므로  
가격과 품질면에서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양돈용 납플도 생산  
기타 장비도 주문시 시공해 드립니다.

---

**전화상담 환영**

# 金道精密

서울·구로구 고척동 103 - 42번지  
고척공구상가 가-B 열 321호  
☎ (02)682 - 7563 (야) (02) 688 - 9353